

## ●보건복지부공고 제2025-334호

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5일

보건복지부장관

###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「간호법」이 제정(2024. 9. 20. 법률제20445호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(안 제21조)

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##### 나.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(안 제24조)

- 1)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.
- 2)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업무를 그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## 다.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

「의료법 시행령」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,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관한 사항,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관련 사항을 이관함

##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
- 전자우편 : seulgi6@korea.kr

#### 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(전화 044-202-269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